

●소방청공고 제2022-259호

2022년 11월 25일 고시 및 공고된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 및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에 일부 오기가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소방청장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NTPC) 고시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성능기준 정정 고시사항 (기존 고시일 : 2022. 11. 25.)

연번	고시명(고시번호)	기존 고시사항(22.11.25.)	정정 고시사항(22.12.16.)
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전부개정 발령 (제2022-32호)	1)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 제10호 10. 제8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1)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 제10호 10. 제9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2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전부개정 발령 (제2022-37호)	1)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S 104A)	1)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기존 공고일 : 2022. 11. 25.)

연번	공고명(공고번호)	기존 공고사항(22.11.25.)	정정 공고사항(22.12.16.)
1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 NFTC 607) 제정 공고 (제2022-208호~ 제2022-245호)	1) NFTC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 https://nftc.nfri.go.kr 2) 1.5.1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0000의 화재안전기준(NFSC 000)」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1) NFTC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 https://nftc.nfire.go.kr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0000의 화재안전기준(NFSC 000)」에 따른다.
2	소화기구 및	1) 2.2.1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1) 2.2.2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안전기술기 준(NFTC 101) 제정 공고 (제2022-208호)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 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 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 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 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 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 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TC 103) 제정 공고 (제2022-210호)	1) <u>1.7.1.22</u>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 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1) 1.7.1.1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 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NFTC 103B) 제정 공고 (제2022-212호)	1) <u>1.6</u> 경과조치 2) <u>1.6.1</u>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 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는 종전의 「화재조기진압용 스 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에 따른다. 3) <u>1.6.2</u> 이 기준 시행 전에 1.5.1 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 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4) <u>1.7</u> 다른 법령과의 관계 5) <u>1.7.1</u>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 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 전의 규정에 같음하여 이 기준 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1.6 경과조치 2) 1.6.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 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는 종전의 「화재조기진압용 스 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에 따른다. 3) 1.6.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 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 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4) 1.7 다른 법령과의 관계 5) 1.7.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 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 전의 규정에 같음하여 이 기준 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5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1) 2.10.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2.10.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TC 104) 제정 공고 (제2022-213호)	다만, 2.10.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10.2.3와 2.10.2.5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10.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10.2.3와 2.10.2.6 를 적용하지 않는다.
6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TC 104A) 제정 공고 (제2022-213호)	1) 2.12.3.3.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 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2) 2.12.3.3.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1) 2.12.3.3.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 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2) 2.12.3.3.4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7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TC 106) 제정 공고 (제2022-216호)	1) 1.6.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에 따른다. 2) 1.6.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에 따른다. 2)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8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TC 107A) 제정 공고 (제2022-218호)	1) 2.4.1.2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다음 식 (2.4.1.2)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1) 2.4.1.2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다음 식 (2.4.1.2)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table><tr><th>소화약제</th><th>K1</th><th>K2</th></tr><tr><td>IG-01</td><td>0.5685</td><td>0.00208</td></tr><tr><td>IG-100</td><td>0.7997</td><td>0.00293</td></tr><tr><td>IG-541</td><td>0.65799</td><td><u>0.00293</u></td></tr><tr><td>1G-55</td><td>0.6598</td><td>0.00242</td></tr></table>	소화약제	K1	K2	IG-01	0.5685	0.00208	IG-100	0.7997	0.00293	IG-541	0.65799	<u>0.00293</u>	1G-55	0.6598	0.00242	<table><tr><th>소화약제</th><th>K1</th><th>K2</th></tr><tr><td>IG-01</td><td>0.5685</td><td>0.00208</td></tr><tr><td>IG-100</td><td>0.7997</td><td>0.00293</td></tr><tr><td>IG-541</td><td>0.65799</td><td>0.00239</td></tr><tr><td>1G-55</td><td>0.6598</td><td>0.00242</td></tr></table>	소화약제	K1	K2	IG-01	0.5685	0.00208	IG-100	0.7997	0.00293	IG-541	0.65799	0.00239	1G-55	0.6598	0.00242
소화약제	K1	K2																															
IG-01	0.5685	0.00208																															
IG-100	0.7997	0.00293																															
IG-541	0.65799	<u>0.00293</u>																															
1G-55	0.6598	0.00242																															
소화약제	K1	K2																															
IG-01	0.5685	0.00208																															
IG-100	0.7997	0.00293																															
IG-541	0.65799	0.00239																															
1G-55	0.6598	0.00242																															
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TC 109) 제정 공고 (제2022-220호)	1) 2.2.1.12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1) 삭제(동일한 문장이 두 번 기입되어 있어 중복 삭제)																														
10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TC 201) 제정 공고 (제2022-222호)	1) <u>1.6</u> 경과조치 2) <u>1.6.1</u>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른다. 3) <u>1.6.2</u>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4) <u>1.7</u> 다른 법령과의 관계 5) <u>1.7.1</u>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6) <u>1.8</u> 용어의 정의 7) <u>1.8.1</u>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5 경과조치 2)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른다. 3)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4)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5) 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6) 1.7 용어의 정의 7)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u>1.8.1.1</u>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9) <u>1.8.1.2</u>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10) <u>1.8.1.3</u>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11) <u>1.8.1.4</u>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u>1.8.1.5</u>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3) <u>1.8.2</u> "신호처리방식"은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말한다. 14) <u>1.8.2.1</u>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 15) <u>1.8.2.2</u>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 16) <u>1.8.2.3</u> "유·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17)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0557	8) 1.7.1.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9) 1.7.1.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10) 1.7.1.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11) 1.7.1.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1.7.1.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3) 1.7.2 "신호처리방식"은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말한다. 14) 1.7.2.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 15) 1.7.2.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 16) 1.7.2.3 "유·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17)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0587
1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TC 202) 제정 공고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0557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0587

	(제2022-223호)		
1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TC 203) 제정 공고 (제2022-224호)	1) 2.4.3.10.1 <u>연감지기의</u> 부착 높 이에 따라 다음 표 2.4.3.10.1 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0557	1) 2.4.3.10.1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3.10.1 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으로 할 것 2)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 0587
1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TC 204) 제정 공고 (제2022-225호)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 <u>0557</u>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 0587
14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TC 205) 제정 공고 (제2022-226호)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 <u>0557</u>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 0587
15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TC 206) 제정 공고 (제2022-227호)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 <u>0557</u>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 0587
16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TC 301) 제정 공고 (제2022-228호)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 <u>0557</u>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 0587
17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TC 302) 제정 공고 (제2022-229호)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 <u>0557</u>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 0587
18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TC 501) 제정 공고 (제2022-234호)	1) <u>1.7.1.7</u> "통로배출방식"이란 거 실 내 연기를 직접 옥외로 배출 하지 않고 거실에 면한 통로의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표 2.3.1.2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른 배출 량	1) 1.7.1.8 "통로배출방식"이란 거 실 내 연기를 직접 옥외로 배출 하지 않고 거실에 면한 통로의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표 2.3.1.2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른 배출 량

통로보행중심 선의 길이	수직거리	배출량
40 m 이하	2 m 이하	25,000 m ³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30,000 m ³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35,000 m ³ /h 이상
	3 m 초과	45,000 m ³ /h 이상
40 m 초과 60 m 이하	2 m 이하	30,000 m ³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35,000 m ³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45,000 m ³ /h 이상
	3 m 초과	50,000 m ³ /h 이상

통로보행중심 선의 길이	수직거리	배출량
40 m 이하	2 m 이하	25,000 m ³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30,000 m ³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35,000 m ³ /h 이상
	3 m 초과	45,000 m ³ /h 이상
40 m 초과 60 m 이하	2 m 이하	30,000 m ³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35,000 m ³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40,000 m ³ /h 이상
	3 m 초과	50,000 m ³ /h 이상

3) 2.3.4.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 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 m² 당 1 m³/min 이상으로 하고 공동예상구역 전체 배출량은 5,000 m³/hr 이상으로 할 것

4) 2.5.5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 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2.5.2부터 2.5.4까지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 2.3.4.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 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m²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 m² 당 1 m³/min 이상으로 하고 공동예상구역 전체배출량은 5,000 m³/hr 이상으로 할 것

4) 2.5.5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2.5.2부터 2.5.4까지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유입**

			구가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분출이 가능하며 이때 의 풍속은 1m/s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9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TC 607) 제정 공고 (제2022-242호)	1) 1.7.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1.8.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1) 1.7.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1.7.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